

● 제289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5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윤기 의원 외 21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19. 8. 7.
- 다. 회부일 : 2019. 8. 13.
- 라. 의안번호 : 892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19년 3월 설립된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추가함(안 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 (이하 “서울시 사회서비스원”)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제안됐음.

### 2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함(안 제33조제1항제6호자목 신설)

-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, 3월에 개소한 후 종합재가센터 4곳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임.
  - 서울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대구·경기·경남 지역과 함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음.
- 해당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, 장애인 활동 지원,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관련 종사자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,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짐.
-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, 복지정책실, 시민건강국, 서울의료원, 복지재단, 여성가족재단, 50플러스재단,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, 2018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심사·의결한바 있음.

-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영역을 고려할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그 소관 부서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창출과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, 서비스질 향상 등을 위해 2019년 3월 개소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소관 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.